

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30.

발의자 : 황주홍 · 윤영일 · 최경환 ·

백재현 · 전혜숙 · 이찬열

김종회 · 이정미 · 김삼화

정인화 · 심재권 · 주승용

채이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,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, 제3자뇌물제공 등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(안 제12조 신설).

#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)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 위원회와 제5조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2조(별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 제)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 책 심의위원회와 제5조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 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